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14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3. 13.(월)
담당 부서	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영민 (044-201-6860)
		담당자	서기관 송석섭 (044-201-6871)
			주무관 강해옥 (044-201-7721)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

-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(5년),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실시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*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'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'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
* 「환경시험검사법」에 따른 (예비)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

-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△성능인증 유효기간(5년)을 설정하고, △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, △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.

- 먼저 성능인증*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.

*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·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

-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*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.

* ①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, ②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

-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,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.
- 또한,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.
 - ‘국가표준기본법’에 따른 시험기관과 ‘산업기술혁신 촉진법’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성능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성능인증 기관 수를 확대한다.(기존 5개소* → 10개소 이상)
 - * 한국환경공단, 산업기술시험원,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화학융합시험연구원, KOTIT시험연구원
 -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.
- 아울러,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* 기준도 마련한다.
 - *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(사용정지),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(1차 경고, 2차 사용정지),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(1차 재점검, 2차 사용정지)
- 환경부는 이번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(me.go.kr) 법령정보에 공개하며,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.
 -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.
2.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·공개 현황. 끝.



1. 개정 배경

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필요

* 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, 다만 성능인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 : 5년(法 5년 이내)

② 성능검사* 실시 :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, 성능점검결과 부적합 경우 등

* 성능인증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

③ 성능인증기관 지정·인력·장비 요건 추가

- (지정 요건) 보건환경연구원, 대기업무 수행 공공기관, 국가기술 표준원 인정 검사기관 → 환경시험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
- (인력 요건)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·검사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(책임자) →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~
- (장비 요건) 현장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

④ 성능점검 대상·주기·방법 신설

- (대상)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
- (주기) 최초 성능점검 후 2년 6개월마다
- (방법) 현장 + 반입 성능점검 ※ 수수료 : 현장 532,400원, 반입 460,900원

⑤ 성능점검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, 기준 부적합(미실시 포함) 측정 기기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(사용정지, 재점검 등) 기준 마련

⑥ 기타 성능점검 신청서·기록부·증명서, 영문 성능인증서 서식 신설 등

3. 향후 계획

☐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, 규제 및 법제심사("23.3~4)

☐ 시행규칙 개정·공포("23.5)

붙임 2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·공개 현황

□ 5개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470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(23.2)

등급	1등급	등급외
계	248	222

※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에 따른 등급 분류

등 급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
1등급	80 % 초과	80 % 초과	80 % 초과	80 % 초과	0.8 초과
등급 외	80 % 이하	80 % 이하	80 % 이하	80 % 이하	0.8 이하

※ 성능등급 2개 등급으로 간소화(시행규칙 별표1 개정, '22.7.25)

□ '22.12월 기준 총 41,093대 설치, 이 중 4,137대 일반 공개 중

구분	지자체			학 교			KT		
	설치 대수	공개 대수	공개율 (%)	설치 대수	공개 대수	공개율 (%)	설치 대수	공개 대수	공개율 (%)
계	4,935	1,889	38.3	33,958	166	0.5	2,200	2,082	94.6
서울	2,976	645	21.7	3,840	58	1.5	502	489	97.4
부산	77	69	89.6	2,095	-	-	240	240	100.0
대구	33	22	66.7	1,639	-	-	180	180	100.0
인천	20	11	55.0	473	-	-	161	161	100.0
광주	196	196	100.0	1,223	-	-	169	152	89.9
대전	41	4	9.8	1,407	31	2.2	172	171	99.4
울산	33	-	-	104	-	-	99	90	90.9
세종	145	145	100.0	1,859	2	0.1	2	2	100.0
강원	27	27	100.0	1,838	-	-	51	43	84.3
경기	949	562	59.2	8,480	20	0.2	213	195	91.5
충북	22	-	-	2,064	5	0.2	40	33	82.5
충남	88	13	14.8	1,992	2	0.1	84	83	98.8
전북	51	38	74.5	182	21	11.5	73	55	75.3
전남	19	12	63.2	2,353	-	-	33	33	100.0
경북	141	28	19.9	1,338	-	-	62	45	72.6
경남	117	117	100.0	2,495	27	1.1	44	35	79.5
제주	-	-	-	576	-	-	75	75	100.0

* 지자체, 학교, KT 조사 기준